

평화체제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구상

김 주 성(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요약 |

6·25 전쟁 뒤 한반도의 평화는 휴전협정의 정전체제로 유지되어왔다. 정전체제란 남북한 쌍방의 대규모 무장병력이 비무장지대 양편에 대치하고 있는 무장대치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자 부단한 외교노력이 경주되었다. 남북한에 평화체제가 정착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좀더 공고해질 것이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민족공동체의식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평화체제의 안정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한, 평화체제는 본질적으로 정전체제와 다르 없다.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잠정적인 세력균형의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려면 아마도 계몽철학자들의 지혜를 엿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소는 국내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국제행위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뒤이어 칸트는 민주공화정과 시장제도를 평화의 영원한 원천으로 보았다. 국제사회에 민주공화정이 별로 없던 때에 개진되었던 칸트의 예지는 최근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 그동안 200년 가까이 국제경험을 검토한 결과, 민주공화정들 사이에는 전쟁규모의 무력충돌이 없었던 것이다.

요즈음 칸트의 예지는 민주평화(democratic peace)라는 개념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정착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완성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톨즈는 자유민주정치체제가 아니더라도 민주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사회(a decent society)도 민주평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사회만 되더라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도래할 것이다.

동북아의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공산중국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머지않아 중국은 인권을 보장하는 적정사회로 발전할 것 같다.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핵심국가로서 주권 보다 인권에 더 무게를 두는 현대문명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정치체제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만 해소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흐름이 부지불식간에 흘러넘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칸트와 톨즈의 생각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민주평화구상과 인권평화구상을 밝힌다.

진정한 평화를 구상하려면, 정치체제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루소의 말대로 국내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국제행위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반도문제를 살펴보고, 정치체제와 평화지향성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민주평화구상과 인권평화구상을 밝혀보자.

I.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서

최근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국내시각과 국제시각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의 핵심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가 독립적인 외교의제는 아니다. 북한핵문제는 북한인권문제와 한

반도 평화체제문제와 연동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시각과 국제시각은 외교의제를 달리 구성하고 있다.

국내시각은 먼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점차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각은 북한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국내시각과 국제시각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2004년 4월 16일에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대북한인권결의안의 표결에 기권하였다. 한국정부의 유엔대표부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서 대부분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한국은 선진자본주의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기권하여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였다.

2004년 10월 18일에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2004년 북한인권법’에 서명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가 신장되도록 미국 대통령이 민간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0월 19일에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법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밝혔듯,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보다는 남북관계의 개선 및 남북평화공존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한국정부가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만, 국제사회의 결의안이나 인권법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97년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비롯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나 네티즌들도 대체로 같은 시각에서 더욱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¹⁾

한국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신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대책까지 세우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남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4강대국이 참가하는 북한핵문제 6자회담에서 인권을 의제로 삼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외교가 과연 인도주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권력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사항이 외교적인 수사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구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나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인권외교를 권력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혔듯 한국정부는 인권외교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4년 10월 27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12일에서 25일 사이에 홈페이지(www.acdpu.go.kr)를 방문한 네티즌을 상대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43명의 58%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소속회원들은 10월 1일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달 29일에 미국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법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며, 이라크 해방법의 경우처럼 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침략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를 북한압박정책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인권외교를 내정간섭 또는 북한고립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권력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인권외교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인권을 거론 할 때마다 북한은 “내정간섭”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왔다. 미국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하자,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²⁾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외교를 내정간섭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선전포고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에서 인권외교는 인도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실상에 관한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³⁾ 이러한 사례는 인권외교가 인류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인권외교가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교정책이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지성계는 인권외교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장인 롤즈가 최근 발표한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 잘 나타나고 있다. 칸트류의 전통을 따르는 롤즈

2) 2004년 10월 7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선전포고로 간주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이 적대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6자회담이 파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미국이 우리(북)와의 공존을 부정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 압살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해 모든 대화와 협상이 완전히 파탄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 Joins/News/중앙일보, 2004. 10. 08. 「국감」 주유엔대표부서 북한인권싸고 공방.

는 인권외교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즈는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비난은 물론 강제적인 간섭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⁴⁾ 근대국제정치에서 최고의 권리로 여겨져온 국가의 독립권(the right to independence) 및 자결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도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독립권 및 자결권으로 대표되는 국가주권도 인류보편가치인 인권을 억압하면서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성계의 흐름은 최근 세계의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투키디데스시대 이래로 국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현실주의 명제가 예전처럼 확고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주의 명제란 국제관계는 본질적으로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관계라는 것이다. 홉스가 묘사한 바와 같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상태로 보는 것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인도주의란 무의미하며, 설사 의미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력추구의 한 방편일 뿐이라고 차갑게 인식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본질이 권력투쟁에 있는 만큼, 평화 자체도 독자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평화는 일시적으로 전쟁이 멈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홉스가 평화를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거나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평화는 세력균형(the balance of power)상태로 설명된다.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 어느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전쟁의욕을 억제한다. 세력

4)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London, 1999), p. 38.

균형으로 전쟁이 억제되는 만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세력균형의 형태는 단극형태, 양극형태 및 다극형태의 세 가지가 있다.

단극형태로는 고대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 국가들 사이에 유지되었던 평화체제와 중국의 통일왕조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유지되었던 자소사대(字小事大)의 평화체제를 들 수 있다. 세계2차대전 뒤 미소양국 진영의 핵균형 또는 폭력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는 양극형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극형태로는 키신저 미국국무장관이 구상했던 데탕트체제나 나폴레옹전쟁을 마치고 성립된 비엔나체제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세력이란 체력과 마찬가지로 자라나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쇠퇴한다. 국제사회에서 세력관계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다. 세력균형은 영속적일 수 없다. 한 때 형성되었던 균형상태는 시대변화에 따라 불균형상태로 빠지게 된다. 평화상태는 전쟁상태로 바뀌고, 그 결과 새로운 세력 균형에 다다르면 평화를 회복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차가운 인식이다.

전쟁과 평화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현재의 세력균형상태를 제도화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평화를 구축하는 길은 평화조약을 통해 세력균형상태를 제도화하는 길 밖에 없으리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이렇게 현재의 세력균형상태를 제도화한 것이리라. 그런데 한반도의 맥락에서 현실주의적인 평화체제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 과연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인 삶 자체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평화가 일부 권력자나 계급 또는 국가나 민족 같은 어떤 추상적인 실체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진실로 가치롭다고 보기 어렵

다. 과거시대처럼 집단의 생존자체가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초월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처럼 개개인들의 삶이 귀중해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인권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⁵⁾는 명제가 우리의 인식지평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인간다운 권리를 상실한 삶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굴종의 삶밖에는 안된다. 그러므로 ‘인권 없는 평화’란 굴종의 삶을 재생산하는 정치기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가 어찌 가치롭겠는가? 이러한 인식지평에서 평화체제의 성격과 한계를 살펴보고, 왜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를 구상해야 하는가를 밝혀보자.

한국정부는 그동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자 온힘을 기울여왔다. 정전체제는 휴전협정으로 성립된 것이고, 평화체제는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성립될 것이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물론 북한의 공산독재정부와 남한의 자유민주정부이다. 이들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에서 두개의 정치체제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다. 평화체제는 평화공존체제로서 북한독재체제의 존속을 전제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북한독재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북한동포는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동포가 우리와 역사를 달리해온 사람들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어느 민족에게나 타민족의 인권은 자민족의 인권처럼 절실하지는 않다. 물론 세계화시대에 타민족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민족이기주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

5) 한국인권재단,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서울: 한국인권재단, 2004), p. 5.

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세계정치의 지도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국가라면 타국의 인권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우리의 책무이리라. 더더구나 북한의 동포는 우리와 피를 나누었다. 우리의 책무가 더 무겁다. 동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우리 스스로 분단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리라.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북한동포를 인권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평화체제는 종전의 정전체제와 별로 나을 것도 없다. 평화체제가 보장하는 평화가 정전체제로 유지되어온 평화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좀더 안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전체제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안정될지는 알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성은 본질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의 지속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전쟁 뒤에 줄곧 유지되어온 정전체제에서도 대체로 평화가 유지되어왔다. 국지적인 전투나 긴장이 고조된 적은 있으나, 정전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화체제가 현재의 세력균형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않은 정전체제보다는 좀더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평화체제나 정전체제 모두 현실적인 세력균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평화체제가 진실로 가치로우려면, 평화체제로 말미암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도 북한동포를 무한정 인권사각지대에 방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리라.

북한인권을 도외시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한 창백한 분단이기주의이거나 북한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주사파 민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창백한 분단이기주의나 주사파 민족주의에 빠진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밝혀졌듯, 한국정부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북한인권보다는 평화체제구축에 우선성을 두고 있을 뿐이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자연히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점차 북한인권이 신장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시각은 북한인권문제와 평화체제구축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먼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뒤에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인권문제와 평화체제구축문제를 연동시키려는 국제시각과 대립되고 있다. 어느 시각이 더 효율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뚜렷해진 것은, 앞서 말했듯 “인권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공통인식이다.

만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평화의 혜택은 남북한 동포 모두가 누려야 한다. 핵심적인 평화의 혜택이란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 동포 모두가 충분히 누려야 할 평화의 혜택이란 바로 충만한 인권이다.

남한의 인권상황은 이제 세계기준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 북한에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수 백만 명이 굶어죽었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다. 그동안

수 십 만 명이 정치탄압으로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지금도 시퍼런 정치탄압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못 견딘 북한동포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다. 지금도 수 십 만 명의 탈북자들이 만주별판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북한동포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자명하게도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로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도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려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인권보장의 정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이 명제를 뒤집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북한이 인권보장의 정치체제로 바뀐다면, 과연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영속화될 수 있을까?

II. 정치체제와 평화지향성

인권보장의 정치체제가 적어도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일까? 만일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라면, 남북한이 모두 인권보장의 정치체제로 확립될 때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꽃필 것이다. 먼저 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부터 명료히 해보자.

혹시 인권보장의 정치체제가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평화지향적인 것은 아닌가? 어떤 정치체제도 무한정 평화지향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체제존속을 위해서는 어떤 정치체제

도 다른 정치체제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보장의 대표적인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이다. 자유민주정치체제는 19세기에 모양을 갖추고 20세기에 완성되었다. 그동안 자유민주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와 전쟁을 치룬 예는 비일비재하다.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은 자유민주정치체제가 군국주의정치체제와 벌린 한판의 승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민주정치체제가 파시스트정치체제와 벌린 한판의 승부였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자유민주정치체제는 공산정치체제와 세계적인 냉전을 치루었다.

또한 혹시 인권보장의 정치체제가 서로에 대해 평화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러한 정치체제만의 고유성격일까? 어떤 정치체제도 자신과 같은 정치체제와 친화성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일지 모른다. 만일 역사상 존재했던 정치체제들이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었다면, 서로에 대한 평화지향성은 인권보장의 정치체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서로에 대해 전쟁을 했다면, 서로에 대한 평화지향성은 인권보장의 정치체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역사상 명멸했던 여러 정치체제의 경험을 살펴보자.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존속했던 군주정치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로 수없이 전쟁을 치루었다. 역사에 기록된 전쟁은 대부분 군주정끼리 싸운 것이었다. 동양에서는 군주정을 왕도와 패도로 나누고, 왕도의 군주정은 평화지향적이고 패도의 군주정은 전쟁지향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공자와 맹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춘추전국시대에 열국을 돌며 유세를 펼쳤다. 그러나 왕도의 군주정은 요순우탕(堯舜禹湯) 및 주공

(周公)의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치부되는 이념적인 것이었을 뿐 역사적인 실체로서 다루기 어렵다. 서양에서도 군주정을 선군정과 폭군정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들과 대외적인 성향을 특별히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귀족정치체제는 고대의 스파르타, 카르타고 또는 원로원시대의 로마와 같이 위정자를 선거로 뽑아 정치운영을 했던 정치체제이다. 근대 유럽에서는 세습귀족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동양에서는 고려나 일본에서 근세유럽의 형태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여하튼 서구역사만 살펴보더라도, 고대에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일어난 한니발 전쟁을 비롯하여 근세유럽에서 귀족정치체제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예는 비일비재하다.

현대에 성립되었던 공산주의정치체제는 어떠했는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동구권의 여러 국가와 중국, 북한, 베트남 및 쿠바 등이 공산정치체제로 성립되었다. 이들 사이에 일어난 대표적인 무력충돌사건은 소련의 헝가리침입, 소련의 체코침입 및 중소무력분쟁이다.

1956년에 소련이 헝가리에 무력으로 침입한 사건은 모두 1700 여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규모의 침입사건이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물결이 일어나자 바르샤바조약국을 비롯한 소련이 프라하에 진주하였다. 이 때 소련은 제한주권론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공동체이익이란 무엇인가? 소련의 주도권수호 밖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었다.

소련의 체코침입을 보고 분개한 중국은 소련을 ‘사회제국주의자’라

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소련은 냉전상태에 들어갔다. 1969년에 이르러 중국과 소련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까지 했다. 우스리 강의 다만스키 섬에서 충돌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것이다. 이들의 예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사이에 전쟁한 예는 없는가? 민주주의 정치체제도 고대 아테네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와 19세기에 모양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역사경험은 서로 다르다. 먼저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역사경험을 살펴보자.

고대 아테네는 자신과 똑같은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였던 나라와 여섯 차례나 전쟁을 치루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B.C.431-B.C.404) 때에 아테네는 시라큐즈, 만티네아, 메가라, 멘데, 밀레투스 및 앰피폴리스와 싸웠던 것이다.⁶⁾ 이 가운데 시라큐즈만 빼놓고는 모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아테네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라큐즈와 싸운 전쟁은 절박한 국제정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테네는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채우고자 시라큐즈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고대 아테네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서로에 대해 반드시 평화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호전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아테네의 정치체제를 진정

6)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54-59.

한 민주주의로 볼 수 없으므로, 아테네의 호전성이 직접민주주의의 고유성격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롤즈의 설명방식이다. 이러한 논변들을 살펴보자.

직접민주주의가 군중심리에 휩쓸려 호전적이 되기 쉽다는 것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전쟁 초기에 펠리클레스는 들끓는 아테네 민중의 소리를 외면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이 아테네로부터 10여 킬로미터까지 다가오자, 물 끓듯 소란해진 아테네 시내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펠리클레스에게 쏟아졌다. 그가 예전에 권고한 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군이면서 왜 군대를 이끌고 출격하지 않느냐’고 소란을 떨던 것이다. 이성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군중이 무모하게 나라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펠리클스는 비난을 무릅쓰고 민회도 열지 않고 토론회조차 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모든 방책을 세워서 적군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들었다.⁷⁾ 만일 이 때 민회를 열었다더라면 아테네는 크나큰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펠리클레스처럼 현명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아테네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무모한 정책을 결정했을 것이다. 사실상 몇 년 뒤에 펠리클레스가 죽자,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부채질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 현혹되었다. 그 때 아테네는 무모하게 시라큐즈에 원정대를 파견하여 국력을 소진하고 말았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스파르타의 강화제의를마저 거부하고 해전을 벌였다가 결국 패망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민주주의의 비판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롤즈는 아테네사회의 계급성을 거론하면서, 아테네를 진정한 민주정

7) 투키디데스,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권(서울: 범우사, 1994), pp. 21-22, pp. 162-163.

치체제로 보지 않는다. 인구규모가 30여 만 명이었던 아테네에서 민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은 대체로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서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였다. 실제로 민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6천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롤즈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노예, 외국인, 장인 및 부인들을 지배하는 독재자(autocrats)였다고 본다.⁸⁾ 아테네는 진정한 민주정치체제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소수독재체제와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테네의 호전성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고유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롤즈는 현대의 시각으로 고대 아테네를 비판한 듯이 보인다. 아테네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험되었던 곳이다. 그 때까지 그리고 그 때 세계의 다른 어느 곳도 계급사회가 아닌 곳이 없었다. 아테네는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운영을 하는 역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를 소수독재정치체제와 맞비기는 것은 지나치게 보인다. 아테네의 경험은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시민 모두가 스스로에게 독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튼 롤즈가 지적한 아테네사회의 계급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혹시 아테네사회와 달리 계급성이 없는 직접민주정치사회는 서로에 대해 평화지향적이지 않을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최초의 철학자는 루소이다. 루소는 당시에 군주의 이성애 기대를 걸었던 생 피에르의 영구평화구상안을 비판하고, 인민주권의 민주공화국만이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루소는 군주는 본질적으로 탐욕을 벗

8) Rawls, 앞의 책, p. 55.

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군주의 탐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주는 대외적으로는 타국을 대상으로 정복전쟁을 벌이고 대내적으로는 인민을 대상으로 정복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루소는 인민주권의 민주공화국도 전쟁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결국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의 평화에 대한 욕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믿었다. 더욱이 전쟁은 반드시 압제정치를 초래하므로, 인민은 전쟁수행에 신중하고 정복자가 되는 것도 주저한다는 것이다.⁹⁾ 루소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적인 야심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국내 정치체제가 인민주권의 정치체제로 개혁되면, 영구평화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인민이 과연 루소가 생각하듯이 평화지향적인가? 롤즈의 생각대로 아테네의 시민들을 계급독재자로 본다면, 루소가 생각하는 시민들은 계급독재자가 아니다. 루소가 생각하는 직접민주정치사회에는 성인 모두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한 아테네의 시민과 루소의 인민은 전혀 다르지 않다. 아테네의 시민들도 루소의 인민들처럼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전쟁의 참화와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인민과 아테네의 시민은 본질적 성향이 다르게 보인다. 루소의 인민은 아테네의 시민과 달리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 및 자유의 일부를 공동체에 이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양된 것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중요한 자산들이다. 무엇

9) 최상룡,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나남, 1997), p. 207.

이 공동체에 중요하고 필요한지는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국가주권만이 판단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모두가 일반의지에 따른다면, 루소의 인민은 아테네의 시민과 달리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루소의 인민은 아테네의 시민과 달리 제국주의적인 야심도 별로 없고 전쟁수행에 무척 신중한 사람들일 지도 모른다.

루소의 생각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루소의 인민은 피가 흐르는 실제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반의지에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딘가 창백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정치체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어딘가 비슷하다. 아마도 그 까닭은 루소의 인민이 인권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루소의 인민은 참정권은 누리지만, 기본권은 충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루소가 배척했던 특수의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정치체제는 동양에서 추구했던 왕도의 군주정치체제처럼 역사적 실체가 없다. 루소의 민주정치체제는 5만 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국가이다. 그는 인구규모가 커지면 귀족정치체제가 적절하고 더욱 커지면 군주정치체제가 적절하다고 보았다.¹¹⁾ 루소가 생각하고 있는 인민주권의 소규모 민주정치체제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고 현대의 대규모 사회에 어울릴 것 같지도 않다. 이런 까닭에 루소의 계급성 없는 직접민주정치체제는 역사적 실체로 다루기 어렵다.

10) J. J.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Book II, Chapter IV(New York: Hafner, 1947), p. 28.

11) 위의 책, Book III, Chapter III, p. 58.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체제들은 서로 같은 정치체제에 대해서 평화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어떠한가를 살필 차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되고, 일정주기마다 보통선거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수반을 뽑으며,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인 기본권이 보장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보통선거권은 서구에서조차 20세기 초에 이르러 모든 성인남녀에게 부여되었다.

자유민주정치체제는 19세기에 말에 제 모습을 갖추고 20세기 초에 완성되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본권은 각국의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민권이다. 기본권 개념은 최근 모든 인간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소인권의 개념보다 폭넓다. 따라서 자유민주정치체제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다. 인권은 자유민주정치체제와 다른 정치체제에서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정치체제는 19세기 초에 2개 내지 3개로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 대체로 12개 내지 15개로 늘어난다.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24개 내지 30개로 증가하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60개로 급증한다.¹²⁾ 1989년에 동구권과 이듬해 소련의 사회주의정권이 해체되고 자유민주정치체제로 탈바꿈하자 더욱 많아졌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및 소수의 공산권을 제외하면 전 세계가 민주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국제정치학자들이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19세기

12) 위의 책, p. 20.

에 불완전한 형태의 자유민주정치체제들 사이에 무력분쟁들이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정치체제가 태어난 뒤 서로 사이에 일어난 무력충돌 사건은 총 12개 정도 된다. 이들 모두 엄밀하게 검토해보면, 전쟁규모로 볼 수 없거나 또는 무력충돌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는 자유민주국가로 볼 수 없다.¹³⁾

예를 들어, 1861년의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남부연방(the Confederacy)은 자유민주국가로 볼 수 없다. 당시 남부연방은 노예제를 유지했으므로 자유민주정치체제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1899년에 일어난 보어전쟁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영국의 종주권에 예속되어 있었다.

1939년에서 1940년까지 지속된 겨울전쟁 당시에 핀란드는 공식적으로는 연합국들과 전쟁에 들어갔다. 이 전쟁에서 핀란드는 소련에 빼앗긴 땅을 찾고자 추축국 편에 섰기 때문에, 주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과 맞붙었던 것이다. 서방민주국가와는 거의 무력충돌이 없었다. 1967년의 6일 전쟁 때 민주레바논이 이집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레바논은 전투기 몇 대를 파견했을 뿐이므로 이스라엘과 사이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사경험으로 미루어, 자유민주정치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서로에 대해서 평화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정치체제들이 서로 평화로웠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자유민주정치체제만이 유독

13) 위의 책, pp. 16-19; Michael Doyle, *Ways of War and Peace*(New York: Norton, 1997), pp. 277-284 참조.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은 사실은 평화지향성을 자유민주정치체제의 고유 성격으로 보도록 만든다.¹⁴⁾

물론 이러한 추론이 너무 성급해 보일 수도 있다. 자유민주정치체제의 경험은 2세기에 걸친 짧은 기간에 많지 않은 숫자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정치체제끼리 서로 전쟁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¹⁵⁾ 또한 자유민주정치체제의 개념이나 전쟁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향성은 자유민주정치체제의 징표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자유민주정체가 극소수에 불과할 때 자유민주정치체제의 평화지향성을 예견한 칸트의 논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4)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Michael Doyle, *Ways of War and Peace*(New York: Norton, 1997); Bruce Russett, 앞의 책; John Oneal and Bruce Russett,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dependence, and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June 1997); John Owen,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Michael Brown et al, ed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London: the Mit Press, 1996).

15) David Spiro, "the Insignificance of the Liberal Peace" 과 Henry Farber and Joanne Gowa, "Politics and Peace," Michael Brown et al eds, 앞의 책, pp. 202-238과 pp. 239-262. John Mearsheimer, "Bact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Summer 1990), pp. 50-51.

16) Christopher Layne, "Kant or Cant: the Myth of the Democratic Peace," pp. 157-201, pp. 263-300; Ido Oren, "the Subjectivity of the 'Democratic' Peace," Edward Mansfield and Jack Snyder, "Democratization and the Danger of War," Michael Brown et al eds, 위의 책, pp. 301-334.

Ⅲ. 한반도의 민주평화구상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서로 평화지향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정치체제는 평화지향적일까? 칸트의 논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보자. 칸트가 설득력을 얻는다면, 우리는 남북한이 모두 자유민주정치체제로 확립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민주평화구상(the project of democratic peace)이라고 하자.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을까?

최근 롤즈는 자유민주사회(a liberal peoples)는 적정사회(a decent peoples)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평화원칙은 인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롤즈의 논지에 설득력이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생긴다. 북한이 반드시 자유민주정치체제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 인권보장의 적정사회만 되더라도 충분하다. 이것을 인권평화구상(the project of human rights peace)이라고 하자.

칸트의 논지를 살피면서 민주평화구상을 검토해보자. 인권평화구상은 다음 장에서 다루자. 1795년에 쓴 유명한 “영구평화론”에서 칸트는 매우 낙관적이었다.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여 언젠가는 모든 국가가 공화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의 평화연합이 널리 퍼져서 영구평화가 도래하리라고 믿었다. 여기서 칸트는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칸트가 이렇게 전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민주공화제가 평화의 원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가 평화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첫째, 칸트는 민주공화제가 시민들을 평화지향적으로 만든다고 믿었다. 그는 인간의 비사회적인 사회성(asocial sociability)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민주공화질서가 구축되리라고 보았다.¹⁷⁾ 나아가 똑같은 이유로 민주공화국들은 평화연맹을 구축하리라고 보았다. 비사회적인 사회성 때문에 사람들은 협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자연의 신비로운 힘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공화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연맹을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공화제가 바로 평화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민주공화제가 구축되면 왜 사람들은 평화적이 되는가? 그 까닭은 ‘사람들의 심성이 본래 착해서가 아니라 민주공화제가 사람들의 도덕 품성을 높여놓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공화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심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권리존중의식이 전고해질수록, 종교나 언어가 달라도 각국의 사람들은 “상호이해와 평화에 이르게 된다.”¹⁸⁾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전쟁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게 된다. 칸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만일, 헌법상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동의를 얻어 전쟁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 시민들은 전쟁과 같은 위험스런 일을 벌이는데 무척 주저할 것은 뻔하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자신들에게 전쟁의 참화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나서서 싸워야

17) Kant,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Purpose,” ed., Hans Reiss, *Kant's Political Writing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44.

18) Kant, “Perpetual Peace,” in Hans Reiss, 위의 책, pp. 113-114.

하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전쟁비용을 대야하고, 전쟁의 상처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큰 불행은 평화를 다시 파괴할 수도 있는 재정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계속될 미래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전쟁부채는 영원히 변제될 수 없다.¹⁹⁾

이 논변에는 루소의 영향이 엿보인다. 전쟁의 부담을 모두 져야할 시민들이 전쟁을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전쟁혐오의 심리는 루소의 인민에게나 칸트의 시민에게 똑같다. 그렇지만 루소의 인민은 전쟁혐오에 그치지만, 칸트의 시민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타국 시민과 상호이해에 다다른다. 칸트의 시민은 루소의 인민과 달리 기본권을 누리고 권리존중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전쟁혐오의 심성은 모든 민주공화국에 퍼질 것이므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수행하는 민주공화국일수록 서로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핵문제 때문에 미국 쪽에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암암리에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소식을 듣기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화를 낸다. 북핵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다면 칸트의 논변은 설득력이 커 보인다.

둘째, 칸트는 시장경제가 평화를 촉진한다고 믿었다. 그는 시장경제의 발달로 조만간 모든 사람에게 깃들게 될 상업정신(the spirit of commerce)이 전쟁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²⁰⁾ 상업정신

19) 위의 책, p. 100.

20) 위의 책, p. 114.

이란 경제행위를 하거나 무역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비록 상업정신은 본질적으로 이기심(self-interest)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경제행위를 통하여 상호이익(mutual 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승화된다. 경제행위를 하려면 거래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투쟁정신을 전제하는데, 이 정신은 승자독식의 일방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본질적으로 상업은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이지만, 전쟁은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정신은 전쟁과 양립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상업정신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국제무역의 세계공동체(universal community)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국시민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해야하는 민주공화제 국가들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들 것이다. 물론 평화의 가치를 드는 것은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²¹⁾

상업정신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생각은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²²⁾ 루소는 물론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계몽사상가들은 시장사회가 시민들에게 신사정신을 심는다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의 관찰로는, “매너가 좋은(moeurs douces) 곳에는 상업이 있고, 상업이

21) 위의 책, p. 114.

22) Albert Hirschman, *Rival Views of Market Societ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 106-109.

있는 곳에는 매너가 좋다.”고 한다.²³⁾ 더욱이 상업은 국가들이나 사람들을 서로 유익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히 평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²⁴⁾

시장평화이념은 19세기에 들어와 현저히 퇴조하였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목가적인 전통사회가 붕괴되자, 자본주의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측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상업이 사회의 도덕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였다. 이기심에 기초한 상업주의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공동체 덕목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조선조 후기에 위정척사파의 유림들이 서구문물을 비판한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 한국의 위정척사파와 서구의 보수주의자는 서로 비슷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사회가 호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계급착취로 보고, 자본가들은 전쟁을 하듯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고발하였다. 레닌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제국주의전쟁을 일으키리라고 예언하였다. 이렇게 호전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는 끝내 자기 자신까지 파괴할 운명을 지녔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믿었다. 자본주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들의 비판은 지나쳤다고 보인다. 보수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회의 도덕기반이 무너졌다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까지 파

23)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trans. and eds. Anne Cohler,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book 20, p. 338.

24) Thomas Paine, *The Rights of Man*(New York: E. P. Dutton, 1951), p. 215.

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 전에 사회주의 정권들이 시민혁명으로 스스로 무너졌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고 평화로워 보인다. 세계냉전을 끝내고 디지털시대로 접어드는 요즘, 계몽철학자들의 시장평화이념이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공화체제와 시장제도가 평화의 원천이라는 칸트의 생각은 세계 냉전이 끝난 뒤 더욱 빛을 내고 있다. 이러한 칸트류의 생각을 ‘민주평화(democratic peace)’ 이념이라고 부르자. 민주평화란 용어는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이 만들었는데, 롤즈는 민주평화의 개념이 두 가지 이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사회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이념이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이념이 18세기에 민주주의운동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업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이념이다. 앞서 보았듯, 이것은 자본주의 초기에 계몽사상가들이 품었던 생각이다. 두 가지 이념을 합하면, 우리는 “상업에 종사하는 민주시민들은 서로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롤즈는 칸트의 생각을 상당부분 이어 받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 민주평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뚜렷해진다. 남북한사회에서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장경제가 충분히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영속될 수 있다. 또한 그럴 때만이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

25) John Rawls, 앞의 책, p. 46.

다. 체제몰락을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명실공히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리라.

IV. 한반도의 인권평화구상

민주평화구상은 남북평화통일까지 내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지만, 아무래도 동북아의 정치지형상 쉽사리 꿈꿀 수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거대한 공산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공산북한이 독자적으로 민주화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의 속도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처럼 성공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성공의 위기에서 공산중국이 구소련처럼 해체된다면, 북한은 독자적인 민주화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시기에 공산중국이 우리처럼 민주화를 이룬다면, 북한은 쉽사리 민주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성공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하고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런 기회는 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국가이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초고속의 경제성장으로 사회기반이 흔들리자,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융합해야 할지 난감해진 것이다. 과거의 유고슬라비아처럼 시장사회주의를 추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장상황이 자본사회의 시장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중국의 시장전략이 우리의 시장전략보다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다. 현재 중국지성들은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이념적으로 융합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정합적인 내

용을 갖출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중국의 정치사회체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요즈음 지방선거구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선출되고 있으며, 인민재판이 사라지고 점차 삼급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헌법에 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인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치적인 몸짓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중국은 인권신장의 행보를 늦출 수 없기도 하다. 4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어야 하고, 그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품위있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경제가 성공할수록 평화에 대한 중국국민들의 욕구가 커질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계몽사상가들의 시장평화이념을 염두에 두고 내다본 것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민주화 또는 인권개선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끝내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자 설명력이 높아진 근대화이론을 염두에 두고 내다본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국민들의 국제화요구는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인터넷혁명으로 중국사회의 국제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을 계속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머지않아 중국이 민주화되리라고 점치기도 한다. 중국공산당이 벌써 국가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민주화의 조짐으로 보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성공의 위기와 같은 특별한 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중국의 민주화는 아직 까마득해 보인

26) Joins/News/중앙일보, 2004. 08. 02. 「해외칼럼」 중국, 결국 민주화로 간다(프란체스코 지아비치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 교수, 경제학).

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붉은 깃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은 시장경제의 발전도에 따라 현재의 정치체제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아마도 점차 경제활동과 최소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발전해나가지 않을까?

중국의 정치체제가 앞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든,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떠오른다. 굳이 자유민주정치체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적어도 중국과 같은 정치체제로 발전한다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도와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발전도에 따라 북한의 인권신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와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서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확실해져야, 앞으로 인권보장의 정치체제인 북한과 자유민주정치체제인 남한이 서로 진정한 평화를 나누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인권이란 무엇이고, 현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먼저 인권문제부터 살펴보자.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권이란 용어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넓은 의미로 쓰여져 왔다. 그러기에 종종 혼돈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어떤 정치체제라 하더라도 보장해야 할 보편적인 최소인권의 개념을 밝혀보자. 최소인권의 개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의 최소조건을 표현한다. 최소조건인 삶의 삶조차 확보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체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최소인권의 개념은 현대문명의 존재이유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최소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달라야 한다. 헌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보장되는 기본권내용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인권은 자유민주사회의 시민권과 달라야 한다. 시민권은 자유민주사회에서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어떤 특정한 정치체제에 속한 것이어서 안 된다. 특정한 정치체제에 속하게 되면, 그런 정치체제가 용납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범주에 드는 것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의 4대 기본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본권인의 개념내용을 검토해보자.²⁷⁾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명권으로 생존수단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생존수단이란 최소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경제수단을 말한다. 최소생계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권리와 높은 영광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소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사회에서나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다.

자유권은 노예나 농노로 취급받지 않을 자유, 직업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종교와 사상 때문에 탄압받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권은 계급제나 신분제 또는 사상통제 및 종교탄압이 용인될 수 없다는 현대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재산권은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개인자산을 소유할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은 비슷한 경우는 비슷하게 취급받는 형식적인 평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

27) Rawls, 앞의 책, p. 65.

다. 형식적인 평등의 원칙은 옛날부터 공정한 법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기에 ‘천부적인 공정성(natural justice)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기본인권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특별히 자유민주사회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현대사회에서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특별히 서구전통에 치우친 권리라고 볼 수 없다.²⁸⁾ 물론 인권개념 자체가 서구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대문명의 존재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권리는 확보되어야,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자.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대 중국에는 무호적자들이 무려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모택동 시대에 “하나만 낳기” 산아제한정책의 희생자들이다. 둘 이상을 낳은 집에서는 한 아이만 호적에 올리고 다른 아이는 숨겨서 키웠다. 주로 낙후된 농촌벽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숨어서 자란 이들은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도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민증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인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없다.

중국의 무호적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중국에서 쉬쉬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들에게 기본인권을 되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나서서 이들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인권

28) T. M. Scanlon, “Human Rights as a Neutral Concern,”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ed, P. Brown and D. MacLean(Lexington: Lexington Books, 1979), p. 83.

이념은 현대문명의 핵심에 자리잡고, 국경을 초월하는 현대인의 보편적 권리와 보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인권이념은 제2차세계대전 뒤에 확립되어온 국제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규범이 인권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그 규범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위수단이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전쟁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둘째 정부의 대내적 자율성이 이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 때문에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사항에 관한 한 타국에게 내정간섭도 할 수 있으며,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개입도 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서 연역된 것이 원조의무이다. 인권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나쁜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국제원조의 의무가 있다.²⁹⁾ 여건이 되는데도 인권을 돌보지 않는 나라에 내정간섭이나 전쟁개입을 할 수 있다면, 여건이 너무 나빠서 인권을 돌볼 수가 없는 나라에는 원조해야 할 의무도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식량원조를 자청하고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국제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인권은 이렇게 국제사회에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최고규범이 되었다. 최고규범으로서 인권은 이제 국내정치 및 사회제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충분한 기준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기준인 것이다. 4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는 '적정수준의 정치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민주평화'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9) Rawls, 앞의 책, p. 37.

‘민주평화’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타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 제재나 경제제재 및 무력간섭을 받지 않는다.

‘적정수준의 정치사회’가 ‘민주평화’의 당사자로서 자유민주의 정치 사회와 함께 누리는 평화를 ‘인권평화(human rights peace)’라고 부르자. 민주평화와 인권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 평화의 국제원칙이나 인권평화의 국제원칙은 똑같기 때문이다.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인권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규범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³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평화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민주평화’의 당사자는 자유민주사회뿐이다. 그러나 ‘인권평화’의 당사자는 적정사회와 자유민주사회이다.

한반도에서 인권평화를 구축하려면, 북한은 굳이 자유민주정치체제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 북한이 적정사회로만 바뀌어도 자유민주사회인 남한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수준의 정치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롤즈가 개략적으로 예상해본 적정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서, 적정사회의 최소조건을 가늠해보자.

30) 롤즈는 이러한 국제규범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정치공동체(롤즈는 정치공동체를 peoples로 표현하고 있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정치공동체의 자유와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정치공동체는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정치공동체는 평등하며 자신들을 구속하는 합의사항의 당사자가 된다. 4. 정치공동체는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정치공동체는 자기 방어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 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6. 정치공동체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정치공동체는 전쟁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된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 정치공동체는 적정수준의 정치 및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다른 정치공동체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Rawls, 위의 책, p. 37.

적정사회는 자유민주사회와 달리 권리의무가 사회그룹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된 위계사회이다. 이러한 위계사회의 불평등은 노예사회와 달리 적정선을 넘지 않는다. 적정선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다르다. 첫째조건은 사회그룹별 불평등이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정사회가 자유민주사회와 달리 목적인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조건은 사회그룹별 대표들이 참가하는 사회협의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협의과정에서 사회그룹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대표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이러한 사회불평등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노예사회는 노예계급의 이해관계가 정치과정에서 전혀 대표되지 않으므로 과도하게 불평등한 사회인 것이다.³¹⁾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고, 상당한 정도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적정사회는 부권사회(paternalistic society)와 달리 정치적인 의견차이를 허용하고, 상당한 정도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회는 평화지향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리를 적게 누리는 사회그룹이라도 구성원들은 최소인권을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룹의 이해관계가 사회협의과정에서 대표되기 때문이다. 권리를 최소로 누리는 그룹의 의사까지도 사회협의과정에서 대표되는 한, 그러한 정치과정에서 쉽사리 전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롤즈의 기준으로 중국사회나 북한사회를 바라본다면, 무엇보다도 롤

31) 위의 책, pp. 71-75.

즈가 말하는 사회협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인민대표들이 전국인민대회라는 사회협의과정에 참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무호적자의 대표나 최근에 탄압받고 있는 법률평의 대표들이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사회가 적정사회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전국인민대회에서 진실로 다양한 사회그룹의 대표들이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사회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최근 법률평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벌써 광화문네거리에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인권이 보호될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된다면, 이들의 이해관계도 중국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될 때, 중국의 모든 국민은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갖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때, 중국사회는 평화지향적인 적정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중국은 민주평화의 일원이 되어 자유민주사회들과 인권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 동참하고자 적극적이므로, 중국은 머지않아 적정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회의 발전경로가 어떤 것인지, 또한 적정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실체로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북한은 중국의 정치발전경로를 밟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어떤 사회모습으로 바뀌어 가는지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식 적정사회가 북한의 미래사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렇게 적정사회로 바뀐다면, 한반도에는 인권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 Abstract |

A Peace Project beyond the Peace Treaty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ace after the Korean War was not quite stable because there was no peace trea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There have been lots of diplomatic endeavors to make a peace treaty especially after the 7.4 Korean Common Communiqué in 1972. However, those endeavors failed so f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w doing her best to make a peace treaty with her northern counterpart. The prospect of this project is not so promising ye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seem to give up her nuclear armament plan in near future. Even if she makes a peace treaty with her southern counterpart giving up her nuclear armament plan, korean peace shall not be solid enough to make korean people feel completely safe.

As far as the stability of a peace treaty system depends on the balance of power, korean peace could not be expected to be solid. The balance of pow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o stable as that of other regions. Therefore, we need to set up a peace system the stability of which is not for the balance of power but for the right reasons.

There are two ideas of peace for the right reasons such as democratic peace and human rights peace. The idea of democratic peace asks both counterparts of peace to sustain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re were no war between liberal democratic governments at least since 1815. If we believe in this international experience, we must induce the North Korea to change her political sys-

tem into liberal democracy for a peace for the right reas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dea of human rights peace asks one counterpart of peace to sustain a decent political system which secures human rights to all her people. As far as a political system secures human rights, as Rawls maintains, she can be a member of democratic peace. Securing Human rights is a *raison d'êta* in the contemporary world politics. If we believe in this idea, we can expect a soli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far as the North Korea is changed into a decent political system.

〈참고문헌〉

- 김승채, 이학곤,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 2002).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지평서원, 2000).
- 최상룡,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나남, 1997).
- 투키디데스,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서울: 범우사, 1994).
-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 한국인권재단,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서울, 2004).
- Brown, Michael,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London: the Mit Press, 1996).
- Doyle, Michael, *Ways of War and Peace*(New York: Norton, 1997).
- Hirschman, Albert, *Rival Views of Market Societ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Mearsheimer, John,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Summer 1990).
- Michael, Howard, *The Invention of Pea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Montesquieu, Baron de, *The Spirit of Law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Oneal, John and Russett, Bruce,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dependence, and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June 1997).

Paine, Thomas, *The Rights of Man*(New York: E. P. Dutton, 1951).

Rawls, John, *The Law of Peoples*(London, 1999).

Reiss, Hans, *Kant's Political Writing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Rousseau, J. J., *The Social Contract*, Book II(New York: Hafner, 1947), Chapter IV.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Scanlon, T. M., "Human Rights as a Neutral Concern,"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Lexington: Lexington Books, 1979).